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장



-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고기간 : 2024. 04. 29. ~ 2024. 05. 13. (15일간)
- 문의처 : 양주시 일자리환경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1)
-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2022. 1. 28.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소유하신 차량이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